Ⅳ.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

- 1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
- 2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

1.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

□ 관련법령

- ○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36조
- ○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」제42조

□ 시설개요

- 위 치 :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공유동(15동) 6층
- 최초위탁 : 2017. 10. 11.
- 운영주체 : (사)여성사회교육원
- 사업내용
 - 시민사회단체, 청년활동가 대상 성평등 의식 항상과 역량강화 위한 교육·컨설팅
 - 네트워크 구축으로 성평등 활동 활성화 및 여성 시민사회단체 설립과 운영 지원 등

□ 민간위탁 필요성

○ 성인지 교육과 민관협력체계 운영에 특화된 전문기관에 위탁해 추진하는 것이 성차별문화 해소 및 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에 더욱 효과적임

□ 민간위탁 주요내용

- 위탁기간 : 3년 (2019.10.11. ~ 2022.10.10.)
- 위탁업무 :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
 - 성평등 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, 시민사회 활동가 성평등 및 성인지교육 실시
 - 성평등 활동 관련 네트워크(온·오프라인)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
 - 성평등 활동 활성화 및 협업을 위한 장소, 시설·설비 지원
 - 여성 시민사회단체 설립과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성장 지원
 - 그 밖에 성평등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- 소요예산 : 545,181천원(2019년 기준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위탁(공모)

□ 향후 계획

○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: 2019. 7월

○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: 2019. 9월

○ 민간위탁 위·수탁 협약체결 : 2019. 10월

작 성 자 여성정책담당관 : 윤희천 ☎ 2133-5005 여성단체협력팀장 : 송영희 ☎ 5021 담당 : 고현경 ☎ 5024

2.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

□ 관련법령

- ○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제6조 및 제12조
- ○「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9조. 제12조
- ○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- □ 시설개요(구 서울특별시 은평직장맘지원센터)
 - 위 치 : 은평구 통일로 684 혁신파크내 (녹번동)
 - 최초위탁 : 2017. 9.
 - 운영주체 : (사)노동희망
 - 사업내용
 - 직장막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
 - 직장막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, 일·가족 양립 및 가족치화 사회문화 조성

□ 민간위탁 필요성

○ 여성 노동권과 직장맘 모성권리 보호를 위해 노동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상담·교육 경험 등을 요하는 사무로 전문기관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

□ 민간위탁 주요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19. 9. 15. ~ 2022. 9. 14. / 2회차)
- 위탁사무
 - 직장여성의 노동권과 모성보호 지원
 - 일·가족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
- 직장맘을 위한 가족돌봄 등 제공 등
- 소요예산 : 392,130천원('19년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위탁(공모)

□ 향후 계획

○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: 2019. 6월

○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 : 2019. 7월

○ 민간위탁 위·수탁 협약체결 : 2019. 8월

작 성 자 여성정책담당관 : 윤희천 ☎ 2133-5005 성평등노동팀장 : 이광재 ☎ 5041 담당 : 김영식 ☎ 5019